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무공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내용으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9523호, 2023. 7. 11. 공포) 및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9526호, 2023. 7. 11. 공포, 10. 1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, 별지 제2호서식 중 신청 연령 제한 안내를 삭제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총리령 제 호

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대상구분 란 중 “※ 75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됩니다.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